

『스포츠산업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0.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2.10.17.

〈차 례〉

I .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4
III . 자료수집	20
IV . 통계처리 및 분석	37
V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44
VI . 통계기반 및 개선	59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스포츠산업조사」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1. 통 계 명

스포츠산업조사(승인번호 : 제113021호)

2.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3. 법적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Mixed Mode Survey를 활용한 단계적 실시

※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원칙(자기기입식 병행)으로 하고 방문 조사가 어려운 일부 업체는 이메일 및 팩스조사 병행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 기준시점 : 12. 31.

○ 조사 실시기간 : 매년

○ 조사 공표주기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일정별 수행업무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일정
준비단계	조사 기획	6월 2주
	조사표 작성	6월 3주~7월 2주
	모집단 선정	7월 1주~7월 2주
	표본 설계	7월 3주
	조사원 채용	7월 3주
실사 수행 및 데이터 입력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7월 4주
	준비조사	7월 4주
	본조사 실시	8월 1주~10월 2주
	조사진행 관리	8월 2주~10월 2주
	데이터 입력	9월 1주~10월 3주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데이터 검증	10월 1주~10월 3주
	데이터 클리닝	10월 4주~11월 1주
	결과 분석	11월 2주~12월 1주
	최종 보고서 작성	12월 2주~12월 4주
	사후 지원	계약 종료 이후 6개월

7. 통계연혁

□ 개발 배경

- 2007년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제정됨
- 이러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 동법 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됨
-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2008년 최초로 본 조사가 시행됨
- 본 조사는 국내 스포츠산업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조사임

□ 조사연혁 및 변경 이력

- 최초 작성년도 : 2008년
- 2010년: 제1회 조사 실시
 - 정부 승인통계 지정
- 2011년: 모집단 정비
 - 모집단 정비조사 최초 실시, 조사표 개편,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 2012년: 특수분류체계 개정
 - 기존 특수분류체계 v2(45개 세세분류) v3(65개 세세분류로 개정)
- 2013년: 표본수 확대
 - 조사 표본수 2,500표본 → 7,000표본으로 확대 개편
- 2014년: 스포츠산업 영위 판별 기준 재정립
 - 스포츠산업 영위에 대한 판별기준 매출액 10% 이상 기준으로 재정립
- 2015년: 모집단 정비조사 규모 확대
 - 모집단 정비조사(대상 업종) 규모 기준 10% → 30% 확대
- 2017년: 표본수 확대, 및 지역단위 결과 산출(17개 시도)
 - 조사 표본수 7,500표본 → 12,000표본으로 확대 개편, 지역(17개 시도) 결과 산출
- 2019년: 특수분류체계 v3 일부 개정, 지역(17개 시도) 결과 공표
 -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특수분류체계 일부 개편 및 17개 시도 결과 공표
- 2021년: 모집단 휴폐업 정보 연동(국세청)을 통한 현행화
 -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모집단 휴폐업 정보 연동을 통한 모집단 정교화

8. 통계의 작성목적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실제적 현황을 파악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육성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학계의 연구자료로 활용

□ 활용분야

- 스포츠산업 정책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 스포츠산업 진흥 및 육성의 공식적인 지표 활용

□ 활용현황

- 향후 경기전망 참고자료 및 정책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디어데일리 = 고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8년 기준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미디어데일리 | 2020.01.31 | 다음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발표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사업체 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더퍼블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2019 스포츠... 더퍼블릭 | 2020.01.31

문체부,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성장 지속 중"
[미디어퍼블릭] 김보문 기자=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결과로 스포츠산업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됐고, 더불어 문체부는 지역 불균형 문제와 스포츠... 미디어퍼블릭 | 2020.01.31

문화체육관광부,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성수 기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8년 기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 뉴스메가 | 2020.01.31

스포츠산업 성장세 가파르다. 2019 실태조사 살펴보니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2018년 조사 결과다. 전년 대비 사업체 수 1.9%(10만... 스포츠Q | 2020.02.03

"스포츠시설업 13% 성장, 수도권 풀림은 여전" [문체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현황을 조사한 '2019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8년 기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 스포츠조선 | 2020.01.31 | 다음뉴스

'재미도 있는데 돈도 본다'..韓경제 신성장동력 된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활발한 일자리 창출 효과 나타나... 늘어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연구원이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2014~2019) 사업체 수는 9만...사진제공=문체부 이에 따라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머니투데이 | 2022.01.18 | 다음뉴스

스포츠산업,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크다..80조원 규모
[스포츠서울 = 통계청 인턴기자] 스포츠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스포츠산업의 매출액은 80조 7000억원으로, 국내 전체 산...스포츠서울 | 2022.01.19 | 다음뉴스

스포츠산업, 자동차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등 최대 5배 기여
전체 산업에서의 비중 증가로 경제적 위상 높아져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5년 1.28%에서...OSEN | 2022.01.18 | 다음뉴스

스포츠 취업유발효과, 자동차 등 주력 산업 2~5배 오마이뉴스 | 2022.01.18 | 다음뉴스

25년만에 분격도 올랐다 '서남부중핵스포츠타운' 충청권 대표 체육·주거타운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며 탄력이 붙었다. 대규모 사업 면적과 재정적 이유로 중앙투자심사가 재상정됐는데, 이를 반영해...마지막 중추심 통과에서 당초 체육시설과 주거시설, 그리...중도일보 | 2022.03.21

스포츠산업, 서비스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 크다
문체부, 스포츠 국가경제 기여도 연구 발표는 생산 및 주력 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전제 산업...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국사업체 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은 전체 산업에...나타났다.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의 스포츠산업 비중도 201...이데일리 | 2022.01.18 | 다음뉴스

"스포츠산업 생산성·고용창출 효과, 제조·서비스" 서울신문 | 2022.01.18 | 다음뉴스

"스포츠산업, 석유화학 후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스키이데일리 | 2022.01.18

9.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 유형별 용도

-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산업연구원 등
 - 용도 : 스포츠산업 경제효과 분석,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 스포츠산업 정책 방향 수립 및 지원 등
- (학계)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자, 예비연구자, 대학원생 및 스포츠산업 종사자 및 개인 등
 - 용도 : 논문 작성,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 동향 파악, 종사하고 있는 업종별 지역 산업 현황 등

II. 통계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항목

□ 주요 용어 정의

○ 상용 근로자

-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종사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
 - *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 파견직 포함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
- 법인사업체의 경우,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회사대표(사장, 대표이사 등)는 포함

○ 임시 및 일용 근로자

-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일일단위(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 특히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는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
-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 *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 파견직 포함
-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도 자영업자에 포함
 - ※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해당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는 자
 -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분류

○ 기타 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 연간 급여액

- 연간 급여액 = 급여 + 제수당 + 상여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하고 당해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 매출액

- 1년간(1.1.~12.31.)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얻은 매출총액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입
- 제조업 : 당해 사업체에서 직접 제조 생산하였거나, 원재료를 제공하고 위탁생산하여 납품 받은 모든 제품과 부산물 판매 등 금액
- 도소매업 : 상품을 판매하고 얻어진 상품 판매액과 기타 영업수익으로 이루어지며, 상품권 판매, 외상(할부)은 상품 인도 시점에 판매액으로 계상
- 서비스업(교육 포함) : 사업활동(용역제공) 등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액
 - ※ 위탁사업자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아닌 실제 사업장 매출을 수익액으로 조사
 - ※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예산집행액 및 경상경비 지출액으로 조사함
 - ※ 동일기업내 내부 거래분에 대하여는 내부거래분도 해당 사업체(공장,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의 매출액으로 조사
 - ※ 사업체의 결산시기가 12월이 아닌 경우 최근 결산시기를 기준으로 조사하되 비고란에 결산시기를 기입

예) 3월 결산인 경우, 비고란에 “2020.03.~2021.02”를 반드시 기입

○ 영업비용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임
-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매출원가는 제조업(제조원가)+도소매업(매출원가)+서비스업(매출원가) 합한 금액임

구 분	내 용
제조업 (제조원가)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주요 재료, 보조재료, 부속품 등의 사용금액(원부 재료비) 등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기입
도소매업 (매출원가)	●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매입비 등 매출액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기입
서비스업 (매출원가)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입한 원가성격의 재료 매입비 등 사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영업이익

- 매출액 - 영업비용

□ 조사항목 체계

○ 구체적인 설문 항목

조 사 항 목	세 부 항 목	조사목적
■ 사업체 일반사항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사 대상 사업체 확인
■ 조직형태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자본금	결과 분석 시 조직 형태에 따른 주요 지표 산출
■ 종사자수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인력충원 현황	스포츠산업 인력 총계 파악 및 처우에 대한 자료 수집 향후 인력 충원 현황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업 실적	사업 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스포츠산업 매출 규모 파악
■ 사업체 경영전망	매출액 증감률	스포츠산업 영위 사업체의 향후 시장 전망 파악
■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	영위 사업의 상세 내역 확인
■ 특성항목(업종별)	상품별 구성비,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고객 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업종별 특성화 문항을 통한 이용자층 파악 및 매출 발생 주체 파악
■ 설문문항	- 스포츠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부문 -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의 장애 요인과 지원부문 -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등	정책 추진 방향 설정 및 지원 방향 수립

□ 주요 용어의 정의나 개념 비교

주요 용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스포츠산업 조사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좌동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함 •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	좌동
■ 기타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	좌동
■ 사업체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	좌동

□ 주요 개념 및 항목별 정의

○ 사업체

-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예시 : 회사 본사(본점), 지사(지점), 공장, 상점, 백화점, 의류소매점, 당구장, 관공서, 신문사, 방송국, 대학교, 분교, 대학부설연구소 등

○ 기업체

-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최소 경영단위로서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있고 수입, 지출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 등)를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
- 1개의 기업체는 본사, 지사, 지점, 공장, 영업소 등 1개 혹은 여러 개의 사업체로 구성됨

○ 스포츠산업

-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를 기업활동의 수익대상으로 바라보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하는 일체의 생산활동

○ 스포츠음료

- 스포츠음료는 스포츠 현장에서 적절한 수분 공급 및 에너지원의 부분적 재보충을 목적으로 하여 제조된 당분과 전해질 등이 포함된 기능성 음료

- 캠핑용 식물제품
 - 캠핑용 식물제품은 캠핑에 사용되는 텐트, 로프와 같은 직기에 걸쳐 짠 물건으로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의 제품
- 구멍 자켓, 구멍 벨트
 - 구멍 자켓과 구멍 벨트는 수상용 인명구조용을 목적으로 부력재 또는 co2 gas를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
- 스포츠의류 제조
 - 스포츠 의류 제조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거나 스포츠 종목의 특성인 기능적, 활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되는 의류제품
- 스포츠의류 부분품
 -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의류 제조에 필요한 부품
- 등산용 배낭
 - 등산에 사용되는 물건을 넣어서 등에 질 수 있도록 형겅이나 가죽 따위로 만든 가방
- 경기용 및 특수용 신발 제조
 - 경기와 특수한 종목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발의 제조
- 경기용 운동화 부분품
 - 경기를 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운동화의 부품
- 수렵용 공기총, 경기용 총포탄
 - 수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압축 공기의 힘을 이용하여 탄알이 발사되도록 만든 총, 경기용 총포탄은 경기에 사용되는 총포의 탄환
- 범선, 요트, 카누, 카약
 - 범선은 바람을 이용한 선박으로 돛단배 또는 돛배라고 불리우며, 요트는 배안에 세워진 돛대와 고물(뒷부분)에 달린 키를 조정하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나아가는 선박
 - 카누는 선수·선미가 뺏족하고 1개 이상의 노로 움직이는 경량의 소형 선박으로 정의
 - 카약은 좌석에 앉아 발을 앞으로 하고 노를 좌우로 번갈아 저어 빠르기를 겨루는 카누 경기
- 무도장
 -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
- 체육공원 운영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세분 중 하나로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운영
- 스포츠토트
 -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 레저 게임(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
- 스포츠인 매니저
 - 스포츠인 매니저는 선수의 입단, 연봉, 인도스먼트(광고, 협찬, 라이선싱, 출판 등), 미디어관계 관리를 큰 축으로 하여 선수의 훈련지원, 재무관리, 문제해결 법적자문에 이르는 모든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
- 스포츠용 자전거

- 견고하고 전문 산악용으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MTB를 포함하여 일반온로드 위주로 달리면서도 MTB처럼 스포츠틱한 디자인과 구성을 가진 자전거(싸이클, 자전거묘기용 BMX 등)

○ 댄스교습

-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율동적인 예술 활동을 교습(밸리댄스, 탭댄스, 포크댄스, 사교댄스, 힙합댄스 등)

□ 부정확한 응답 가능성이 있는 조사항목

- 스포츠산업조사는 사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매출을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은 조사이며, 사업체의 주요 정보(매출액, 영업이익, 영업비용,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인력 현황)의 조사결과가 상호 간 로직에 따라 부합해야 함
- 따라서 조사 결과 수집 시 현장 1차 검증을 통해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하고 결과 입력 시 조사표에 따라 논리 설계된 응답 범주를 설정하여 오류 발견 시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 함

1-2 적용 분류체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스포츠산업특수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 업종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의 산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는 생산 단위(사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임
- 스포츠산업특수분류는 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스포츠산업에 특화하여 그 유사성에 따라 개발된 특수 분류임
 - 3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스포츠산업특수분류 v3를 활용

< 스포츠산업특수분류 v3 >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KSIC	산업분류명
스포츠 시설업	10101	경기장 운영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	1010103	경주장 운영업
	10102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1010203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1010204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1010205	당구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010207	무도장 운영업
		체육공원 운영업	1010208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기원 운영업	1010209	기원 운영업
	10103	골프장 및	1010301	골프장 운영업

		10104	스키장 운영업	1010302	스키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401	낚시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타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02 스포츠 시설 건설업	10200	스포츠 건설업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스포츠 용품업	201 운동 및 경기용품업	20101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10104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0102	스포츠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제조업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0103	스포츠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스포츠 서비스업	301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	스포츠 경기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30102	스포츠 베팅업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73901	매니저업
		30103	스포츠 마케팅업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010399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02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0201	스포츠 미디어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58121	신문 발행업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0222	유선 방송업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303 스포츠 교육기관	30299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30300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3030002	무술 교육기관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2 85613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39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9901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990101	온라인· 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9902	스포츠 여행업	3990200	스포츠 여행업	75210 75290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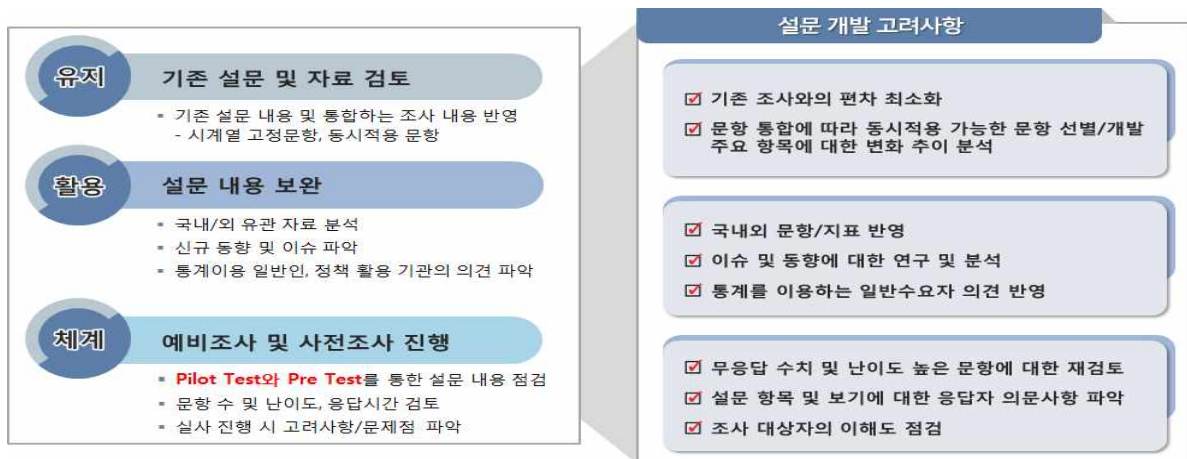
1-3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 현황

- 스포츠산업조사는 스포츠산업 총량 개념의 주요 지표(매출, 종사자 등)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적 필요에 따라 부가 문항 등의 추가를 통해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 함

조 사 항 목	세 부 항 목
■ 사업체 일반사항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조직형태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자본금
■ 종사자수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인력충원 현황
■ 사업 실적	사업 실적, 스포츠산업 비중
■ 사업체 경영전망	매출액 증감률
■ 사업의 종류	사업내용
■ 특성항목(업종별)	상품별 구성비,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 고객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 설문문항	- 스포츠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부문 -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의 장애 요인과 지원부문 - 스포츠산업 매출증대방안 등
■ 부가문항	- 코로나 관련 피해(매출, 종사자)현황 확인 - 종사자의 스포츠산업 종사 비중 등

□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조사표 검증 강화



□ 조사표 개선 내역

- 단조로운 설문 조사표를 가능한 구체화하여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 확대
- 응답자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를 위하여 맞춤형 조사표 설계 및 조사방식을 도입
- 조사표의 일관성 및 항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문항 재구성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재, 다음의 통계 변경승인(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
 - 표본설계, 설문지 등 확정
 - 관련 서류 준비(이하 첨부서류 참조)
 - 통계청에 변경 승인 신청 공문 발송
 - 변경승인[협의] 신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www.narastat.kr/pms/index.do) 업로드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구: 신청서류 확인, 변경사항 및 사유 검토 등
 - 변경승인 및 결과 통보: 변경승인 결재, 공문발송, 시스템에 처리완료
- ※ 신청 시 필요 서류: 통계법 시행규칙 제12조
 1. 변경승인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 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2부
 4. 통계 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내역(표본조사의 경우에 한함) 1부

1-5 조사표 변경이력

- 2020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9차→10차)에 따른 스포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 변동사항 반영, 응답자 편의를 위한 문항 순서 변경, 응답 비중이 낮은 보기 변경 등(승인일 2020.11.30.)

1-6 응답 소요시간

□ 사전조사를 통한 응답 소요시간 검토

- 응답 소요시간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상이함
 -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20분 ~ 45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50인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의 경우 최소 40분 이상, 최대 1시간 30분 가량 응답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 ※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일정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결과
- 응답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조사표 사전 공유에 따른 응답 부담 감소
 - 사업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20인 이상) 대표자 외 인력, 재무 등 관리자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경우 방문 전 조사표 전달 및 재무제표 작성 유무 확인과 자료 준비 요청에 의해 응답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모집단

-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중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특수분류」 ‘스포츠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조사모집단 보완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 66개 스포츠산업 산업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 내용 확인을 통해 최신 모집단 확보
 - 20인 이상 사업체 및 4개 정비 필요 업종에 대해 정비 조사

□ 모집단 분포

- 국내 기업체 모집단 현황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는 97,668개로 추정(2020년 폐업 사업체 반영)

< 대분류별 사업체수 >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38,279	39.2
스포츠 용품업	30,876	31.6
스포츠 서비스업	28,513	29.2
합 계	97,668	100.0

< 대분류별 종사자 수 >

(단위 : 천명, %)

구 분	종사자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62	39.2
스포츠 용품업	120	31.6
스포츠 서비스업	94	29.2
합 계	376	100

< 대분류별 지역별 모집단 비율 >

(단위 : 개 %)

구 분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		합계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서울특별시	6,925	18.1	5,135	16.6	5,777	20.3	17,837	18.3
부산광역시	2,310	6.0	2,362	7.6	1,978	6.9	6,650	6.8
대구광역시	1,722	4.5	1,643	5.3	1,496	5.2	4,861	5.0
인천광역시	1,993	5.2	1,288	4.2	1,388	4.9	4,669	4.8
광주광역시	1,084	2.8	862	2.8	932	3.3	2,878	2.9
대전광역시	1,056	2.8	852	2.8	848	3.0	2,756	2.8
울산광역시	941	2.5	678	2.2	623	2.2	2,242	2.3
세종특별자치시	173	0.5	106	0.3	187	0.7	466	0.5
경기도	9,290	24.3	7,460	24.2	7,026	24.6	23,776	24.3
강원도	1,613	4.2	1,392	4.5	906	3.2	3,911	4.0
충청북도	1,412	3.7	952	3.1	810	2.8	3,174	3.2
충청남도	1,579	4.1	1,355	4.4	1,000	3.5	3,934	4.0
전라북도	1,377	3.6	1,230	4.0	980	3.4	3,587	3.7
전라남도	1,418	3.7	1,216	3.9	836	2.9	3,470	3.6
경상북도	2,182	5.7	1,688	5.5	1,302	4.6	5,172	5.3
경상남도	2,510	6.6	2,157	7.0	1,871	6.6	6,538	6.7
제주특별자치도	694	1.8	500	1.6	553	1.9	1,747	1.8
합 계	38,279	100.0	30,876	100.0	28,513	100.0	97,668	100.0

○ 모집단의 층화

- 공표범위는 전국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 및 66개 세세분류 업종별 주요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결정함
- 층화변수 : 업종, 종사자 규모, 지역
- 2017년부터 스포츠산업 대분류에 대한 지역별 통계량을 공표함. 따라서 대분류별 지역별 표본의 할당을 우선 시행함
- 각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층에 결정된 표본크기는 각 층 내에서 각 시도별 표본 사업체 수에 제공근비례할당함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의 출처

- 통계명 : 전국사업체조사, 기업체 명부
 - 조직형태, 규모, 업종 등에 대한 정보 포함
- 작성기관 : 통계청
- 작성년도 : 2020년

□ 표본추출틀의 선정 이유

- 스포츠산업조사는 국내에 소재하며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스포츠산업조사를 위해 확보 가능한 최신의 모집단 정보를 갖고 있음

□ 표본추출틀 구축(갱신) 과정 및 내용, 주기

- 표본추출틀 갱신
 - 변동된 모집단을 반영하고자 매년 표본추출틀을 새롭게 구축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새롭게 확보하여(4월경) 모집단 변동사항 분석 후 정비과정을 거쳐 표본설계를 진행

< 표본추출틀 개편 주기, 필요성, 방법 및 절차, 결과 >

구분	내용
표본 개편	· 매년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해 확보된 최신의 모집단을 활용
필요성	· 스포츠산업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5인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체 생멸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매년 표본추출틀을 최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방법 및 절차	· 통계청을 통해 최신의 스포츠산업 영위 사업체 명부 수령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차 모집단 선정 · 조사 위탁업체를 통한 모집단 전화정비 후 표본설계 진행
결과	· 보다 정확한 스포츠산업 모수 추정

□ 표본추출방식

- 3개 대분류(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별로 제공근비례할당된 표본을 지역별로 역할당($p=0.5$) 후, 지역 내 세세분류 업종과 종사자 규모에 따라 제공근 비례할당을 하는 경우 세세분류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가 25% 내외로 통제되어 이를 최종 표본의 크기로 결정함
- 2017년부터 공표범위를 스포츠산업 대분류 및 지역으로 변경함.
 - 스포츠산업 대분류 및 지역별 추정치의 생산과 공표를 위해 우선 대분류별 지역별 표본 할당 시행
 - 네이만할당과 제공근 비례할당, 역등 할당을 통해 대분류 지역별 상대표준오차가 25% 이내가 되는 최적 표본의 할당 방법을 시뮬레이션 함
 - 대분류 지역별 네이만할당과 제공근비례할당된 표본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가 두 할당 방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제공근비례할당이 상대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음
 - 따라서 대분류별로 제공근 비례할당된 표본 사업체 수를 세세분류별에 제공근비례할당 할당함

□ 표본추출틀 설정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 66개 스포츠산업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 내용 확인을 통해 최신 모집단 확보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방법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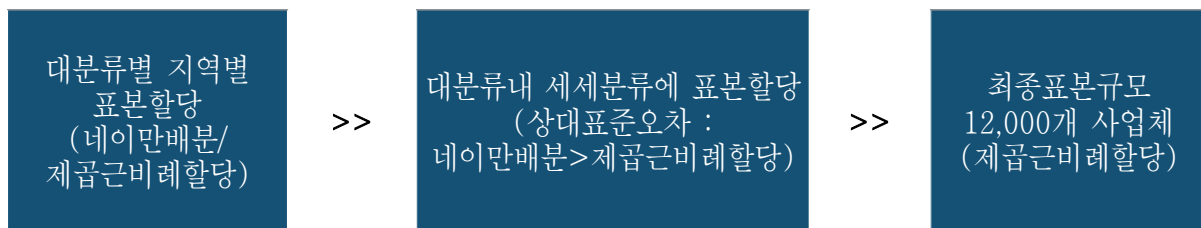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66개 스포츠산업 산업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사업 내용을 확인 과정을 통해 모집단 확정 업체,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업체, 모집단 제외 업체로 분류함

모집단 포함 여부 확인 필요 업체의 경우 모집단 판별 조사, 전년 조사 결과, 행정자료 매칭 등을 통하여 보완 과정을 거침

- ◆ (모집단 판별조사)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 내용을 통하여 스포츠산업 영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아래 4개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13,258개 사업체
* 1020001, 1020002, 3990101, 3990200
- ◆ (별도보완) 스키장운영업(1010302)은 별도 보완하였으며, 방송업증**은 202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서 스포츠 및 스포츠 관련 취미분야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추가 보완함
** 3020105, 3020106, 3020107

- (보완방법) 위에 언급한 산업세세분류에 속하는 사업체를 전화조사 및 전년조사와 교차검토, 행정자료 매칭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는 ‘대상외’ 처리하여 보완하고,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를 이용하여 최종 모집단을 추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계산하여 추정함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 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최종 표본의 할당 방법 및 최종 표본의 크기 >



□ 표본설계결과

< 대분류별 표본수 비율 >

(단위 : 개, %)

구 분	사업체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5,613	46.3
스포츠 용품업	3,247	26.8
스포츠 서비스업	3,256	26.9
합 계	12,116	100.0

< '19~'20년 세세분류별 표본규모 현황 >

(단위 : 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2019	2020
	코드	분류		기준 조사	기준 조사
전체				12,007	12,116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	87	89
		101010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0	89
		1010103	경주장 운영업	15	15
		101020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422	413
		101020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808	947
		1010203	수영장 운영업	245	257
		1010204	볼링장 운영업	257	313
		1010205	당구장 운영업	506	647
		1010206	골프연습장 운영업	676	793
		1010207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93	103
		1010208	체육공원 운영업	44	60
		1010209	기원 운영업	128	158
		1010301	골프장 운영업	315	267
		1010302	스키장 운영업	16	16
		1010401	낙시장 운영업	163	197
		1010499	기타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211	240
		101990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93	590
	스포츠 시설 건설업	1020001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310	273
		102000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127	146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 용품업	2010101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148	160
		2010102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16	133
		2010103	자전거 제조업	32	34
		2010104	낙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130	129
		2010105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52	49
		2010106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43	46
		2010199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13	16
		2010201	스포츠 의류 제조업	211	208
		2010202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88	96
		2010203	스포츠 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37	44
		2010204	스포츠 관련 의류부분품 제조업	32	30
		2010301	스포츠 가방 제조업	40	44
		20103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57	58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업	2010303	스포츠 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50	43
		2020101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287	255
		2020102	자전거 도매업	79	80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20201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148	156
		2020104	스포츠 가방 도매업	15	11
		2020105	스포츠 신발 도매업	91	64
		2020201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451	419
		2020202	자전거 소매업	221	193
		2020203	스포츠 의류 소매업	471	428
		2020204	스포츠 가방 소매업	15	17
		2020205	스포츠 신발 소매업	232	195
		2020206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155	167
		202030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198	172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경기 서비스업	3010100	스포츠 경기업	70	71
		3010201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1	1
		3010299	기타 스포츠 베팅업	55	54
		3010301	스포츠 에이전트업	28	32
		3010302	회원권 대행 판매업	64	66
		3010303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30	32
		3010399	기타 스포츠 마케팅업	393	366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3020101	스포츠 신문 발행업	8	9
		3020102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29	22
		3020103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3020104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3020105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8	9
		3020106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	5
		3020107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	7
		3029900	기타 스포츠 정보서비스업	12	12
	스포츠 교육기관	3030001	태권도 교육기관	823	722
		3030002	무술 교육기관	557	496
		3030099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970	887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990101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07	97
		3990199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4	33
		3990200	스포츠 여행업	377	335

3-2 표본관리

□ 표본 내 변동 발생 시 수정 · 보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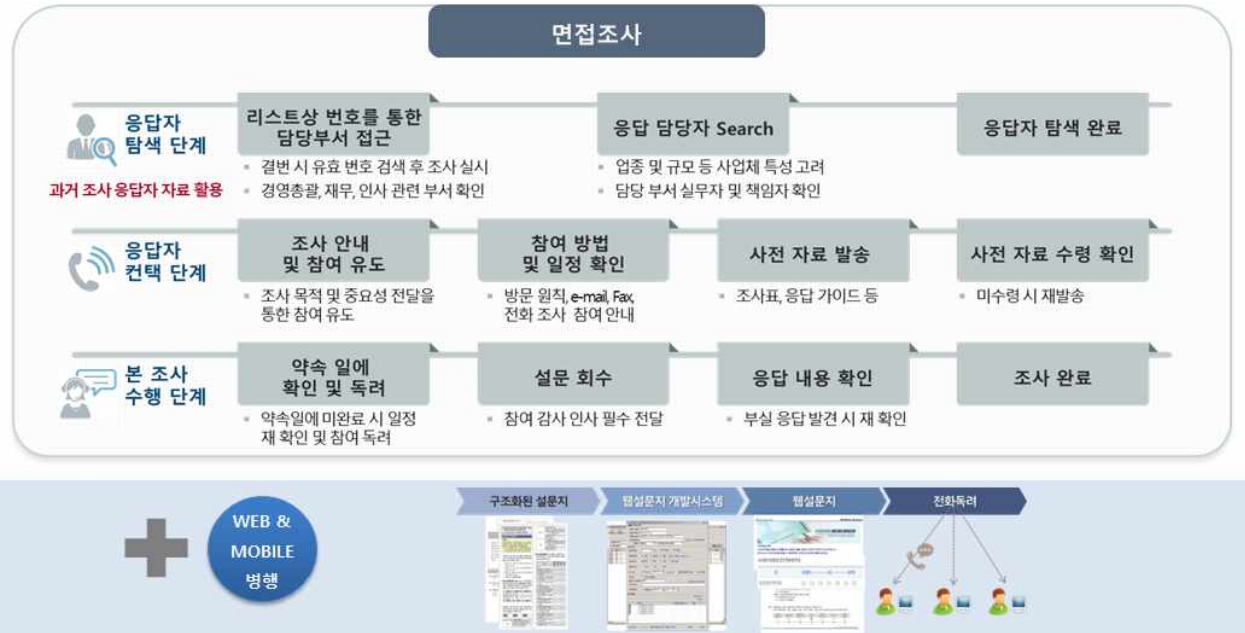
- 전수층 : 휴·폐업, 업종변경 등의 조사 불가 사항 발생 시 경우 해당사항을 상세히 기록,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조사를 마침. 다만, 조사 참여 거절 시 조사의 목적과 중요성을 재전달하고 응답 유도
- 표본층 : 휴·폐업, 업종 변경, 거절 등의 조사 불가 사항 발생 시 경우 해당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자에게 보고 후 대체 표본으로 조사 진행
 - 표본 대체방법 : 원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표본으로 대체하여 조사 진행
 - i) 표본층 내의 세세분류 기준 동일 업종에서 우선 대체
 - ii) 동일 업종내에서 사업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수행사 담당 연구원에게 보고 후 지정 표본으로 조사 진행
 - iii) 대체 기준으로 표본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조사 관리자에게 반드시 보고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체는 web, e-mail 및 Fax 조사를 병행 실시



2. 조사 실시

2-1 조사업무 흐름도

□ 조사업무 흐름도

주요 업무	일정	세부 준비 내용
조사원 교육	8월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실시
컨택 및 면접조사 실시	8~10월	• 리스트상 번호를 통한 담당부서 접근 후 조사 안내 및 참여 유도 • 사전 컨택 실시 후 방문 일정에 따라 실사 수행
보완조사	10월말	• 조사 미진행 전수층의 경우 2차 자료 수집을 통해 보완 • 2차 자료 부족 시, 전년도 자료, 무응답 대체를 통하여 보완 • 전년도 기준 미진행 전수층의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통계진흥원에서 기초자료 요청하여 보완
조사표 입력·내점 및 정리	10월	• 실사 진행된 data와 무응답 대체된 data를 취합
조사표 집계·검토	11월	• 각 업종별 매출액과 종사자 수 결과 비교

2-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 준비 및 홍보

- 응답자 사전 통지
 -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조사표 발송 전 사전 컨택을 통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여 자발적 조사참여를 유도함
- 조사명부 보완
 -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명부를 통해 담당자 연락처포인트를 보완, 확정
- 조사원 준비물
 - 조사원증 : 사업체 방문 시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
 - 조사지침서 : 조사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수록한 지침서로서 교육을 받은 후 2~3번 정독하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항상 휴대하여 현장에서 조사지침으로 활용
 - 사무용품 : 필기구, 조사표 등
 - 협조공문 : 위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

2-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조사표 관련 공통 사항

- 조사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조사원 ID
 - 조사원 개인별로 부여된 ID번호를 기입
- 행정구역 분류번호
 - 행정구역분류번호 7자리 중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2자리 부호를 기입
- 산업분류
 - 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 고유번호를 기입

★조사원ID	★행정구역 분류부호	★산업분류	★ 사업체 고유번호

□ 기업개요 항목

일반현황		귀 사업체의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1 사업체명 (간판명)	※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우, 공식적 명칭을 기재한 후 ()에 실제 통용명칭을 기입				
	()	사업장 대표자	2 대표자명	2-1 성별 ①남자 ②여자	
3 소재지	읍·면·(법정)동	지번	리	번지	호 동 반
	빌딩	빌딩	동	층	호
4 창설연월	※ 현재의 산업활동(업종)을 시작한 시기		5 사업자 등록번호		
	□□□□ 년 □□ 월			□□□□ - □□ - □□□□□□	

- 사업체명
 -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주요 취급상품명 및 사업형태를 기입
 -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실제 통용명칭이 다를 경우 공식 법인명을 기재 후 실제 통용명칭을 공식적 법인명 뒤에 ()를 하고 기입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명은 법인명 뒤에 (재), (사), (복), (중), (학), (의) 등과 같이 축약하여 기입하고, 지사(점)의 경우 부가하여 기입
 - 사업체명 : 기업(협회)명 + (법인형태) + 지사(점)명 + (실제통용 명칭)
- 사업체 창설연월
 - 현 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연월을 기입
 - 지사, 지점, 분소, 출장소의 경우 본사(점) 기준이 아닌 해당 지사, 지점 등이 영업을 개시 기준으로 기입
 - 창설연월 변경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3가지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변경한 때를 창설연월로 기입
 - ① 주요업종(산업대분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조직형태가 변경 되었을 경우(예: 개인사업체 ⇒ 회사법인)
 - ③ 대표자가 변경 되었을 경우
- 소재지
 - 법정동명과 번지, 호를 기입
 - 빌딩, 시장, 상가 등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경우 빌딩, 시장, 상가의 명칭과 동·층·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사업체에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를 기입

조직형태

6 귀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 회사이의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 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으로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① 개인사업체(☞문7로 이동)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문7로 이동)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문7로 이동)

6-1 사업체 구분

*문6에서 ②회사법인, ③회사이의 법인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시오.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본점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문7로 이동)

6-2 자본금

*문6에서 ②회사법인, 문6-1에서 ①단독사업체, ②본사·본점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시오.

()백만원

○ 조직형태

- 경영주체의 법적 조직형태를 말함

< 조직형태 구분 기준 >

구분	내용
① 개인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 사업체 명칭만을 고려하여 회사법인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 운영형태는 개인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어도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개인사업체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② 회사 법인	• 상법상의 회사(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 참조)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 - 외국회사(상법 제614조~제621조 참조) :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 지사, 지점 등
③ 회사이의 법인	•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
④ 비법인 단체	•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 법인격 없는 단체나 모임 등이 포함(문화단체, 후원회, 노동단체, 법인이 아닌 교회 등) - 단체의 성격이 같은 후원회,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여부에 의해 회사이의법인, 비법인단체로 구분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법인인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영조물) 등으로서 그 구성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시설 등 • 국·공립의 학교와 병원 등 공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특별한 공적 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인 공공시설(영조물 등)을 포함

○ 사업체구분

-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의 법인인 경우만 작성

< 사업체 구분 기준 >

구분	내용
① 단독 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본사·본점	• 동일한 경영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1개 이상 운영하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③ 회사이의 법인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체

○ 자본금

- 조직형태가 회사법인이면서 [6]-1 사업체구분이 단독사업체, 본사·본점인 경우에만 작성

종사자수													
7 2020년 12월 31일 기준, 종사자 수, 인력충원 현황 및 연간 급여액은 어떻게 됩니까?													
※ 2020. 12. 31 기준, 종사자 수를 기업(연말기준)해주시고, 단, 계절성을 지닌 사업체(수영장, 스키 등)는 영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수를 기업해주시십시오.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고용계약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계약 모두 포함)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③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직접 경영하는 자(* 법인사업체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 ⑤ 기타 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로 등을 조사 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 (기본급 등 일정급여는 없으며, 만약 일정급여를 지급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 임시 및 일용으로 기업)													
	종사자수(명)					연간 급여액 (세전) (백만원)					인력충원 현황		
	남	여	계								'20년 신규자수 (명)	'21년 신규자수 (명) (계화된 인원 포함)	
합계 (①+②+③+④+⑤)						천	백	십	억	천	백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③ 자영업자						※ 상용근로자의 급여계수(상당여금을 합한 금액을 기업하되 복리후생비 퇴직금은 제외 (미지급 급여액은 포함))							
④ 무급가족 종사자													
⑤ 기타종사자													

○ 종사자수

- 조사대상 사업체의 2020. 12. 31. 현재 종사자수를 기업
- 종사자수 합계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된 종사자를 기업하며, 종사상 지위별로 남·여를 구분하여 기업

<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구분 기준 >

구분	내용
① 상용근로자	•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종사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일일단위(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③ 자영업자	•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도 자영업자에 포함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해당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는 자
⑤ 기타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 사업실적

- 재무제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에 √ 표시

사업실적								
★ 재무제표 작성 여부 *해당하는 곳에 √로 응답해주시요.								
① 작성 ② 미작성								
8 2020년 1년 동안 영업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문★에서 ① 작성 응답한 경우, 재무제표와 일치하여 기업해 주시고, ② 미작성 응답한 경우, 실제 사업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업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조	천	백	십	억	천	백
(1) 매출액(수익액)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2020년 1년간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얻은 수익액							
수출액	▶ 매출액 중 해외로 수출한 매출액							
(2) 영업비용	▶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							
가. 매출원가	▶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매출원가 비용							
• 제조업(제조원가)	▶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한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 도소매업(매출원가)	▶ 상품매입비 등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 서비스업(매출원가)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나.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기타영업비용 등							
(3) 영업이익	▶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 사업실적 구분 기준 >

구분	내용
① 매출액	• 2020년 1년간(1.1~12.31.) 영업활동(제품제조, 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얻은 매출총액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입
② 영업비용	•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한 비용임 • 매출원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제외한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지급수수료, 기타영업 비용 등
③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재확인하고, 적자 사유를 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입

8-1 스포츠산업 비중 내수·수출 및 스포츠산업·비스포츠산업 비중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내수 매출액 비중에서 비 스포츠 산업 비중이 없는 경우, 사전 처리해주시고, 2020년 기준, 비 스포츠 산업 매출액이 "0"인 경우, ② 비 스포츠 산업 란에 "0.0"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출액 비중 (①+②+③+④)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① 스포츠산업	② 비 스포츠산업	③ 스포츠산업	④ 비 스포츠산업
100.0%				

○ 스포츠산업 비중

- 내수와 수출에서 각각 스포츠산업과 비 스포츠산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작성(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항목별 비중 합이 100.0으로 조사가 되어야 함

【예시】 매출액 비중	내수 매출액 비중		수출 매출액 비중	
	스포츠산업	비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비 스포츠산업
100.0%	35.5%	30.0%	20.0%	14.5%

- 내수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중 = $\frac{\text{내수 스포츠산업 매출액}}{\text{전체 매출액}} \times 100$

사업체 경영전망	
9 전반적인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사업체의 입장에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경영 현황 및 전망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5.5% 증가한 경우 +5.5%, 10.0% 감소한 경우 -10.0%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응답 기준, 전년과 동일하거나 동일할 것이라 전망하는 경우, 0.0%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2019년 대비) 증감률	2021년(2020년 대비) 증감률 전망
()%	()%

○ 사업체 경영전망

- 국가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조사대상 사업체의 입장에서 작성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감률과, 2020년 대비 2021년 매출 예상 또는 목표 증감률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
- 전년대비 5.5% 증가할 경우 +5.5%로, 10% 감소할 경우 - 10.0%로 작성
- 전년과 동일한 경우 반드시 0.0%를 기입

사업의 종류				
10 귀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를 ①~③에 먼저 ✓로 응답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사업의 종류는 ①~③ 중 주 사업 분야 하나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 (중복응답불가)	10-1 사업내용			비고
	무엇을 (제품, 서비스 내용)	누구에게	생산·제공 하였는가	
	예 시			
	스포츠의류 (체육복, 등산복)		제조	
	캠핑용품 (텐트, 침낭)		제조	
	당구장·수영장· 골프연습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	
	자전거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태권도를	학생 대상으로	교습		
① 스포츠 시설업 - 스포츠 시설 운영업 - 스포츠시설 건설업				11-1로 이동
② 스포츠 용품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업 및 임대업				11-2로 이동
③ 스포츠 서비스업 - 스포츠경기서비스업 (스포츠경기업, 배팅업, 마케팅업) - 스포츠 정보서비스업(스포츠 미디어업) - 스포츠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서비스업(게임, 여행업 등)				11-3로 이동

○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종류 ①~③에 해당사업체의 업종을 ✓ 표시
- 사업내용은 조사대상 사업체가 어떤 산업에 분류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항목으로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투입, 생산공정, 산출)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입
-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주된 업종에만 기입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확인 후 아래의 사업내용을 기입

< 사업 내용 작성 기준 >

구분	내용
무엇을 가지고 (원재료, 영업장소 등)	• 원재료나 제품을 구입하거나, 영업장소를 얻는 등 활동행위를 위한 사전 작업
어떤 방법으로 (주요 영업, 생산활동)	• 활동행위를 하는 방법의 행태
생산·제공하였는가 (최종 재화, 용역)	• 제조, 판매한 제품(생산) 또는 제공한 용역

○ 상품별 구성비

- 스포츠용품별 내수비중 : 스포츠용품별 내수매출 금액을 작성하고 품목별로 비중을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 스포츠용품별 수입비중 : 스포츠용품 수입액을 작성하고 품목별로 비중을 나누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입

특성항목									
11 문10에서 응답한 사업의 종류에 맞는 문항을 찾아, 응답해주시시오.									
*문10에서 ①스포츠 시설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시오.									
11-1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고객) 수 2020년 영업한 개월 수와 연간 이용인원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연간 영업개월 수	()개월	※ 사업체에서 2020년 중에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파업, 휴업 등은 제외) ※ 한 달간 정상적인 영업일 수의 1/2 이상을 영업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							
(2)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명	※ 2020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 입장객 또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기입							
*문10에서 ②스포츠 용품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시오.									
11-2 상품별 구성비 스포츠용품별 내수 및 수입 금액을 기입한 후, 이를 다시 용품별로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2020년 기준 금액 및 구성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및 구성비는 완제품 수입을 기준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용품별		금액	구성비(%)						
			합계	스포츠 기구	스포츠 의류	스포츠 신발	공 료	라켓류	기타
(1) 내수	()백만원	100.0							
(2) 수입	()백만원	100.0							
*문10에서 ③스포츠 서비스업인 경우만 응답해주시시오.									
11-3 매출액 고객연령별 구성비 매출액을 연령대별 구분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 2020년 기준 금액 및 구성비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금액 지불자가 아닌, 실제 이용고객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비중 (①+②+③+④+⑤+⑥)		구성비(%)							
		①7세 이하	②8세~13세	③14세~19세	④20세~39세	⑤40세~59세	⑥60세 이상		
100.0%									

○ 연간 영업개월 수 및 이용인원(고객 수)

< 영업 개월 수 및 이용인원 작성 기준 >

구분	내용
연간 영업 개월 수	• 사업체가 2020년 1년간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를 말함
연간 이용인원(고객 수)	• 2020년 1년간 사업체의 사업시설을 이용한 인원(고객)수를 유료입장객 또는 회원 수 기준으로 조사

○ 고객연령별 매출액 구성비

- 연간 수익액에 대한 고객연령대별 매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함
-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하며 **합이 100.0%가 되도록 함**

설문문항

12 문항별로 가장 주된 것 하나만 ✓표시를 하고, 「기타」인 경우는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2-1 스포츠산업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스포츠산업이 대외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양성	② 국산제품 품질 제고
③ 자체 브랜드 개발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④ 홍보 및 마케팅 전환
⑤ 대형화·전문화	⑥ 관련 정책부처 지원
⑦ 산·학·연 협력강화	⑧ 기타()

설문문항

12-2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스포츠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부족	② 사업체 규모 영세성
③ 자금부족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⑤ 제도 및 규제 과다	⑥ 외국업체의 시장침식
⑦ 정부지원 미흡	⑧ 기타()

12-3 스포츠산업 육성·발전 지원부문 스포츠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 양성지원	② 자금지원 확대(융자확대 등)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④ 스포츠용품 인증제도(KISS마크) 활성화 및 국제인증 획득지원
⑤ 스포츠산업 통합정보망 구축	⑥ 각종 국제대회 유치(월드컵, 올림픽 등)
⑦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⑧ 기타()

12-4 귀사의 스포츠산업 매출증대 방안 귀사의 매출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문인력채용	② 자체 브랜드 및 신규제품 개발
③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 내수시장 확대
⑤ 해외시장 진출 확대	⑥ 기타()

비 고			
*휴·폐업 및 매출액 증감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조사담당자
	부서		
	성명		
	전화번호	()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문항

-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외경쟁력 강화부문, 육성·발전 장애요인과 지원부문, 매출증대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작성
- 항목별로 주된 것 하나만 조사
- 비고란에는 조사 시 나타난 각종 특이사항을 자세하게 기입
- 응답자는 추후 내용 보완과정에서 필요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2-4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체계

○ 사업체 조사 전담 실사 운영조직 운영

- 다양한 사업체 경영 환경 및 난이도 있는 설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현장에 투입되는 실사 전문 인력과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체 조사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담 실사 조직을 운영하여 조사 전반과정을 점검

○ 현장 조사 관리 방법

- 고경력 실사책임자 및 실사 전담 팀장이 조사 관련 각 실사팀(컨택전담팀, 방문면접전담팀, Data검증전담팀, Data입력전담팀)을 관리·감독(실사팀 1인당 조사원 10명 내외 수준)하고 예비 조직으로 각 지역별 담당자를 별도 배치

○ 현장 조사 관리자 역할

-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조사원 관리 및 민원 등 우발상황에 대응
- 조사진행 시 발생하는 애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실사 지원

□ 파라데이터 기록

○ 파라데이터 수집 항목

- 조사 수행을 위해 사업체와 컨택한 횟수
- 최종 조사 완료 현황
- 조사 수행 방법(면접, Fax, 이메일, 온라인 등)
- 조사 불가 사유(연락처 오류, 컨택 불가, 강력 거절 등)

○ 향후 파라데이터 추가 수집 예정

- 컨택 날짜 및 시간
- 조사 방법별 응답 완료 시간
- 상세 거절 사유에 대한 유형화

2-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조사관련 질의, 응답체계 및 운영방법

- 조사지침(단계별 응답 시나리오 포함) 숙지를 통한 원활한 응답체계 구축
 - 직접대면이 아닌 전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소리톤, 어투 등에 의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친절한 어투, 정확한 발음, 보통속도의 목소리로 진행해야 함
 - 조사실시를 알리고 해당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로, 용역업체가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실태조사의 중요한 조사표본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니 최대한 조사협조 당부하고 필요하다고 할 경우,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함
 - 본 조사는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통계로, 통계의 작성·보급·이용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 통계임을 알려 조사 공신력을 높임
 - 조사대상 기업체, 담당자(직급/이름 등)가 맞는지 확인하며, 응답자 편의에 따른 희망 조사 방법을 질문해 필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① 조사대상 기업체가 맞는지 확인 (업종과 상호명이 같은지 꼭 확인) : 전화교환사원 단계에서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의 중요성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한 리스트는 현재 시점과 업체 정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리스트상의 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함. 즉, 업체명, 업종, 주소 등에 대한 재확인이 응답 대상자와 통화 시에 수행되어야 함
- ② 전년도 응답자 확인 및 조사가능 대상자와 접촉 :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먼저 전년도 응답자 연락을 시도함. 담당자 변경시 조사가능 대상자 연결을 요청하며, 전화연결 시 다시 한 번 조사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함
 - a. 담당자 확인 요령 : 최초 전화를 걸었을 시에는 대부분 교환직원(총무나 인사팀 등의 여직원이 받아 교환)이 처음 받음. 이 때, 위의 연락처포인트를 참고하여 조사가능 대상자를 알려달라고 할 것. 전화를 돌려줄 경우, 반드시 내선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받아적을 것. 단, 교환직원에게 설문 응답 가능한 부서를 스스로 판단해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됨
 - b. 담당자 경력 확인 요령 : 설문에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대상은 대리 또는 과장급 이상임. 따라서, 대리급 이상을 연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임급도 연락 가능하되, 최소 해당 직장에서 2년 이상은 근무한 자여야 함

<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조사 전

- 사업체를 방문하기에 앞서 지참해야 할 용품이 빠지지 않았는지 점검
-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
- 복장을 단정히 하고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되므로 올바른 언행을 하고 응답자와 불필요한 언쟁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리자, 파출소 등의 비상연락처를 메모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미리 연락
- 간편하면서도 단정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

조사업무 수행 시	• 사업체명부를 행정구역별로 정리하여 방문 일정 및 지역을 검토한 후 전화로 사업체 위치를 재확인 및 사전방문 일자 확인 • 가능하면 낮에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 -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은 가급적 피하여야 함 - 야간 방문 시 반드시 사전에 양해 구하고, 특히 안전에 주의 - 불안을 느낄 때는 조사를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함 • 필요 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 정중한 태도로 면접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함 - 부재중인 사업체에 들어가 도난 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함 • 사업체와 약속한 방문 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 • 조사표 회수 시 응답 누락 등의 오류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오류 발견 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즉시 수정·보완함
--------------	--

< 현장조사 요령 >

사업체 방문 및 면접요령	• 응답자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편한 시간대에 사업체 방문 • 사업체 방문 시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자(회계 또는 경리부서)를 만나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
불응 사업체는 최대한 설득	• 조사의 목적, 응답내용의 비밀보호, 결과자료의 용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조사된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세금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
응답자 직접 작성 (자기입식조사)	• 각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작성 중 문의 사항 등을 위해 조사표에 조사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응답자에게 알려주고 조사표 회수일을 약속
사업체 재방문	• 대표자나 실무책임자가 부재중이거나 면담이 곤란한 경우 면담 가능 일시를 약속한 후 재방문하여 조사 • 조사표 회수 시에는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용검토 중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수정
조사지침서 내용 숙지	• 현장조사 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지침서, 조사 중에 전달되는 관련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 • 스스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자의적 판단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며, 담당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처리 지침을 받아 조치
탁상조사 절대 금지	• 사업체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과거자료, 관련 단체의 자료 등 별도의 자료를 이용한 탁상 조사는 절대 금지 • 조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조사할 수 없으며, 조사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조사 관리자에게 보고 후 신규 투입 조사원은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

○ 응답자 컨택 요령

- 사업체를 방문 시 먼저 소속과 방문목적을 밝힌 후 조사표 작성이 가능한 부서(회계, 경리 등)에 조사협조 공문을 접수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하러 온 조사원 000입니다.”
“00부서의 000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느 부서의 누구를 만나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적격 응답자(사업체의 사정을 잘 아는 사업주, 경리 및 재무회계 팀원 등)를 만나 조사목적 등을 설명하고 조사표를 작성

【사례】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부문의 현황을 파악하여 스포츠산업 정책수립이나 스포츠산업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통계법 제32조)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통계법 제33조) 조항을 반드시 응답자에게 알림
-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실시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담당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 주요 질의응답 사례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조사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

3.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3-1 응답자

☐ 적격 응답자 지위 및 지정 이유

- 설문에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담당자(대리 또는 과장급 이상으로 최소 2~3년 근무자)를 기본적으로 적격 응답자로 설정
- 10명 미만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일 경우 총무이사/대표/사장 등을 바로 컨택하여 조사협조 요청

3-2 기억응답

☐ 조사대상 기간(또는 시점)과 조사 시기 차이

- 본 조사는 이전 연도에 대한 사업체 현황에 대해 조사하기에 시점 차이 존재
 - 2021년 8-10월 조사 기간이나,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하여야 함

☐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 검토 요청

- 정확한 응답을 위해 본 조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조사 전 정확한 조사 시점에 대한 안내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사전 요청하여 조사 기준 시점과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결과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함
- 또한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조사 완료 후 2차 자료(경영 공시 등) 확인을 통해 응답 오류를 최소화 함

3-3 무응답 대처

☐ 단위 무응답 최소화 방안

- 조사 거절
 - 표본대체가 어려운 사업체의 경우 조사 거절 시 주관기관에 직접 협조 요청 및 해당

사업체의 사업체명이 명시된 주관기관의 공문발행 요청 등을 통해 단위무응답을 최소화

○ 담당자 부재

- 담당자 부재로 인한 무응답 최소화를 위해 조사 초반 컨택원의 대거 투입을 통해 조사 착수 후 1개월 이내 조사 대상 전체 1차 컨택 후 담당자 부재 시 담당자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컨택 시도

○ 방문조사 거절

- 사업체 방문거절(코로나 등)로 인한 무응답 최소화를 위해 방문 조사 거절 사업체 대상 다양한 조사방법 제시(이메일, 온라인, 팩스 등)
- 그 외 방문 조사원의 코로나 음성 확인(최근 2주 이내) 문자 전송을 통한 조사 거절 최소화 노력

○ 답례품 제공

- 조사표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응답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제공

○ 업종별 조사 시간대 다양화

- 스포츠산업 특성에 따라 조사 업종별 조사 시간대를 달리하여 여유시간에 조사 대상자 컨택 실시

□ 항목 무응답 최소화 방안

○ 무응답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항 사전 파악

- 영업이익 등 사업체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문항에 대해 사전 파악 후 항목 무응답 현장 확인

○ 현장 점검

- 조사 완료 직후(방문조사) 현장에서 항목에 대한 무응답 아이체크 및 발견 시 조사 협조 요청 및 재검토 요청

○ 사후 무응답 점검

- 조사표 회수 이후 Data 입력 시 사전에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된 로직 체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의 누락, 문항 간 로직 오류 등을 점검하여 오류 발생 시 전화를 통한 응답 재확인

□ 무응답 대체방법



3-4 표본대체

□ 표본대체 허용 여부

- 원표본을 원칙적으로 조사하되 35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대체 기준을 적용하여 대체
 - 5회 이상 컨택 불가
 - 조사 거절(3회 이상)
 - 연락처 이상
- 대체 사유 발생 시 조사원 임의 대체가 불가하며, 조사담당자 전달 후 대체 표본을 전달받아 표본대체를 시행
 - 조사담당자는 조사원에게 전달받은 표본대체 사유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연락처 부재 등의 경우 연락처 재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연락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표본대체를 허용
 - 조사 거절 사업체의 경우는 표본층의 경우 거절 사업체 전담조사원을 통해 최종 거절이 확인된 사업체의 경우 대체를 허용. 단 전수층 사업체의 경우 조사담당자가 직접 컨택 후 최종 거절의사 확인

□ 표본대체

- 표본대체는 사전에 추출된 4~5배수 사업체 중 거절 사업체와 동일한 사업체 특성을 갖고 있는 표본으로 대체
 - 동일 업종, 동일 지역, 동일 종사자 규모의 사업체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층에 대체할 사업체가 없을 시 규모, 지역은 동일층으로 유지하고 최근접 업종층에서 대체

4. 사후조사

□ 사후조사 검증

- 회수 조사표에 대한 검증
 - 회수 조사표는 응답자의 명함을 부착하여 함께 제출하여 적격 대상자 확인 및 방문면접 진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검증보완 조사의 품질 향상
- 30% 무작위 검증
 - 조사원별로 무작위 30% 전화 검증을 실시하여 조사원별 10%이상 문제 발생 시 전량 재검증하고 심각한 문제 확인 시 해당 조사원 퇴출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제고

IV.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자료코딩 방법

-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coding) 과정을 통해 전산 입력되며, 다단계 검증 과정에서 최종 입력된 자료는 SPSS for Window(통계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분석됨
- 응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련번호로 부호화하거나 자료 입력 시 제외함

2.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 키 엔터링(key entering) 방법
- 조사표의 내용을 직접 Enter key를 이용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

☐ 전산입력 내용

- 조사표 작성(응답) 내용
- 조사구, 성별, 지역, 연령, 조사표 작성(응답) 세부 내용

☐ 전산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해 적용한 방법

- 전산입력 전문 프로그램인 Surveycraft 사용
- 설문지의 응답 내용 및 로직을 사전 설정함으로써 입력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
- 전문 입력 요원을 활용한 이중입력을 통해 입력 단계에서의 오류 최소화

☐ 자료 입력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일정 및 방법

- 자료 입력 교육 구성은 입력원에 대한 설문지 교육(본사 조사원 집체교육) 후 QCM(편치)프로그램으로 입력 테스트 실시

3. 자료내검

☐ 자료내검 과정

- 자료의 검증은 총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침

단계	내용
현장 검증	- 면접원에 의한 현장검증 진행 - 면접원이 현장에서 응답자가 응답한 설문에 대해 사전에 준비된 조사 지침서를 기반으로 기초적인 문항의 로직, 무응답, 오기입 등에 대한 1차 검증 후 오류 발견 시 응답자에게 보완을 요청함
전문 검증원 검증	- 현장 검증 후 회수된 조사표의 경우 회수 3일 이내 유선 전화를 통한 주요 문항에 대한 검증을 시행함 - 응답자 응답 불일치 및 조사 미시행 사항 발견 시 해당 조사표는 폐기 후 대체 표본을 활용한 재조사 진행
입력원 검증	- 조사표 입력 시 전문 입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입력하고 사전 프로그래밍을 통해 문항 간 로직 및 오류를 검증함 - 해당 과정에서 오류 발견 시 응답자 유선 연락을 통해 응답값 확인 및 보완작업을 진행
연구원 검증	- 최종적으로 입력된 통계자료의 경우 연구원에 의해 통계적 검증을 진행 (극단값, 문항간 Cross check, 논리 일관성 검증 등) - 그 밖에 2차 자료를 활용한 비교를 통한 검증 병행 ◆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비교·검토 ◆ 국세청 부가세, 법인세 자료와 비교·검토 ◆ 기업 경영 정보 공시 및 기관별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자료와 비교·검토

4. 무응답

4-1 항목무응답 대체

□ 항목무응답 대처방법

- 주요항목에 대한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무응답 보완
- 표본층의 경우 보완 조사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항에 대해 무응답할 경우 표본을 대체하여 재조사 실시
- 보완 조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인 아래와 같이 무응답을 보정함
 - 이전조사 자료가 있는 경우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무응답 대체
 - 이전조사 자료는 없으나 경영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응답 대체
 - 이전조사 자료 및 경영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 업종 내 유사 특성의 기업체 결과를 활용하여 무응답 대체

4-2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무응답률 및 단위무응답률 산식

- 본 조사는 단위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음. 단, 단위 무응답이 발생할 경우 조사원이 현장에서 1차 검증, 실사기관의 검증요원이 전화를 통해 응답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재질문을

실시하도록 함. 응답자가 재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사 완료 후 검증 연락에 대해 사전 고지함

□ 단위무응답에 의한 편향 및 분산 발생 가능성 검토 결과

- 동일한 업종, 규모 내에 표본 대체가 이루어져 원표본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를 조사하게 되므로 단위무응답에 따른 편향 및 분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됨

4-3 오차 검증

□ 오차 검증

- 오차 검증원칙
 - 수집된 모든 조사표에 대해 전문 검증원이 검증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함
 - 검증에서 발생하는 에러부수에 대비하여 여유 표본 수를 확보함
 - 검증 결과 고의적인 에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조사원의 조사표 전량을 폐기하고 타 조사원이 추가조사 함
 - 표준화된 Check List에 따라 검증 실시
- 검증방안
 - 통계패키지(SPSS)를 활용, 빈도분석 및 통계표를 점검하여 데이터 이상치 등 에러 체크
 - 문항간 Cross Check를 실시하며,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는 조사표 확인 후 수정
 - 정규분포 곡선에서 상/하위 5% 범위에 있는 이상치는 Data Cleaning을 통해 확인
 - 동일한 그룹(업종, 규모, 기관구분 등)별 평균치 및 이전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비교 검증

5. 통계추정

5-1 가중치 조정

□ 가중치 조정

- 전수층의 경우 단위 무응답 발생 시, 표본층의 경우 업종, 규모에 따른 모집단 비중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되 Calibration 기법 활용
- 무응답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최종 가중치 산출이 완료된 후 $\sum_i \pi_i$ 를 계산하면 정확히 1의 값을 얻게 됨. 그러나 층별 최종 가중치를 이용하여 층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모집단의 값을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Calibration임

□ 가중치 추정 방안

- 가중치 조정 방법으로 단위 무응답 처리 시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응답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활용함

- 응답률 보정 가중 : 응답률의 역수

$$\text{응답률에 의한 가중치} : w_h = \frac{N_h}{n_h}$$

여기에서 N_h : h 층의 조사 성공기업체 수, n_h : h 층의 조사대상 기업체 수

5-2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추정 모수

- 해당기간 중 스포츠산업 사업체수

□ 통계추정 산식

-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 추정 및 가중치 계산

- 세세분류 업종별(h) 층별 스포츠산업 모집단 사업체수($\hat{N}_h$)를 다음과 같이 추정

$$\hat{N}_h = \sum_{i=1}^K \left(N_{hi}^S \times \left(\frac{n_{hi}^S - I_{hi}}{n_{hi}^S} \right) \right) + n_h'^C$$

N_{hi}^S : 확정모집단의 h 업종 i 층 표본층 전체 사업체 수

i : 표본층 첨자 ($i = 1, \dots, K$)

n_{hi}^S : 설계 당시 h 업종 i 층 표본 사업체 수

$n_h'^C$: 조사 완료된 h 업종 전수층 사업체 수

I_{hi} : h 업종 i 층의 부적격 사업체 수

$\hat{N}_h$: h 업종 i 층의 스포츠산업을 영위하는 추정 사업체 수

○ 모수추정

모수추정

- 스포츠산업 대분류의 총계 추정식

$$\hat{X}_d = \sum_h \hat{X}_{dh}$$

- 스포츠산업 대분류별 지역별 총계 추정식

$$\hat{X}_{da} = \sum_h \hat{X}_{dah} \quad \hat{X}_{dah} = X_{dahc} + \hat{X}_{dahs}$$

$$X_{dahc} = \sum_j x_{dahj} \text{ (세세분류가 전수조사되는 경우)}$$

$$\hat{X}_{dahs} = \sum_j w_{dah} x_{dahj} \text{ (세세분류가 표본조사되는 경우)}$$

모수추정

- 대분류별 세세분류 업종의 총계 추정식

$$\hat{X}_{dh} = X_{dhc} + \hat{X}_{dhs}$$

$$X_{dhc} = \sum_j x_{dhj} \text{ (세세분류가 전수조사되는 경우)}$$

$$\hat{X}_{dhs} = \sum_j w_{dh} x_{dhj} \quad \text{단, } w_{dh} = \frac{N_{dh}}{n_{dh}} \text{ (세세분류가 표본조사되는 경우)}$$

참자 h : 세세분류
 c : 전수총
 a : 지역
 d : 대분류(1,2,3)
 s : 표본총
 j : 조사된 기업체
 변수 n : 표본수
 N : 모집단수
 $\hat{X}$: 특성치 총계
 x : 조사된 기업체의 특성치

6.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분산추정

분산추정

- 스포츠산업 대분류별 지역별 총계 추정치의 분산 추정식

$$Var(\hat{X}_{da}) = \sum_h Var(\hat{X}_{dah})$$

$$Var(\hat{X}_{dah}) = \frac{N_{dah} - n_{dah}}{N_{dah}} \frac{s_{dah}^2}{n_{dah}}$$

$$s_{dah}^2 = \frac{1}{n_{dah} - 1} \sum_j (x_{dahj} - \bar{x}_{dah})^2$$
- 스포츠산업 대분류별 세세분류 총계 추정치의 분산 추정식

$$Var(\hat{X}_{dh}) = \frac{N_{dh}(N_{dh} - n_{dh})}{n_{dh}} s_{dh}^2$$

단, $s_{dh}^2 = \frac{1}{n_{dh} - 1} (\sum_j (x_{dhj} - \bar{x}_{dh})^2)$

□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 $SE(\hat{X}) = \sqrt{V(\hat{X})}$
- $rse = \frac{SE(\hat{X})}{\hat{X}} \times 100\%$

□ 극단값 처리

- 모수 추정 시 극단값은 추정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기존의 산술평균 대신 원저화평균 (Winsorized mean)을 이용함
 - 데이터 원저화
 - 1) 매출액(종사자 수) 추정 시 극단값이 존재하는 경우 과대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정대상 셀내에서 매출액(종사자 수)'을 원저화(Winsorized)하여 추정하도록 함
 - ① 극단값의 판단
 - $Q_1 - 1.5 \times IQR$ 와 $Q_3 + 1.5 \times IQR$ 의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 $\mu - 2\sigma$ 와 $\mu + 2\sigma$ 를 벗어나는 경우
 - ② 극단값의 처리
 - 절단(trim) : '매출액(종사자 수)'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데이터의 양 끝 5%의 값을

제거하는 방법. 본 조사연구에서 각 층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 윈저화(Winsorized) : '매출액(종사자 수)' 데이터를 크기순으로 정렬한 뒤 데이터의 양 끝 5%에 해당하는 값을 직전 값으로 대체함. 표본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어 본 조사연구에 적합함

- 2) 지역*세세분류*종사자규모층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상위 5%만 윈저화 이용하여 극단값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3) 극단값 처리 후, 전체 과정을 문서화하여 일관된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함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통계 항목

- 항목별 빈도표 및 교차표
 - 2020년 기준 공표 통계표 74개
- 메타데이터
 - 국가통계포털(KOSIS) 설명자료 및 통계표 업로드
 - 문화샘터 통계표 업로드
 -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체계 66개 세세분류 기준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 2012년 기준 조사부터는 20개 세분류(65개 세세분류)로 새로 개편된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이하 신분류)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2018년 기준 조사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V.3」 체계의 일부 개편을 통해 66개 세세분류로 특수분류 업종이 세분화 됨
 - 2016년 기준 조사부터는 지역별(17개 시도) 공표를 위해 시범조사 성격으로 표본수를 확대 (7,000부 이상→12,000부 이상)하고 17개 시도별 3개 대분류별 주요항목을 공표함
 - 산업조사 결과 중 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수, 영업비용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임을 이용에 참고하기 바람
 - 조사항목별 집계과정에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이로 인하여 하위분류의 합계가 상위분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추출하여 집계하였으나 기업회계 기준에서 업종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종별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므로 실제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내검과정에서 전년도 조사실적에 오류가 발견된 사업체는 수정 보완하여 집계하였음
 - 해당 자료가 없거나 미상일 경우는 [-]을 표시함

□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18~'20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전 체			78,067 (73,603)	100.0	80,684 (75,581)	100.0	52,918 (48,025)	100.0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229	0.3	220	0.3	46	0.1
		실외 경기장 운영업	300	0.4	315	0.4	87	0.2
		경주장 운영업	3,225	4.1	3,022	3.7	509	1.0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236	1.6	1,214	1.5	474	0.9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1,938	2.5	2,198	2.7	757	1.4
		수영장 운영업	374	0.5	395	0.5	188	0.4
		볼링장 운영업	231	0.3	283	0.4	166	0.3
		당구장 운영업	1,001	1.3	1,015	1.3	390	0.7
		골프연습장 운영업	2,005	2.6	2,312	2.9	2,155	4.1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12	0.0	13	0.0	7	0.0
		체육공원 운영업	138	0.2	138	0.2	98	0.2
		기원 운영업	37	0.0	36	0.0	28	0.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5,419	6.9	5,899	7.3	5,957	11.3
		스키장 운영업	1,038	1.3	1,044	1.3	322	0.6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60	0.1	90	0.1	58	0.1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93	0.1	118	0.1	83	0.2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478	0.6	612	0.8	325	0.6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1,287	1.6	1,224	1.5	1,151	2.2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747	1.0	600	0.7	514	1.0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678	0.9	691	0.9	531	1.0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454	0.6	482	0.6	357	0.7
		자전거 제조업	168	0.2	151	0.2	154	0.3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423	0.5	413	0.5	372	0.7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132	0.2	142	0.2	88	0.2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52	0.1	75	0.1	48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216	0.3	194	0.2	81	0.2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4,140	5.3	4,031	5.0	2,852	5.4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14	0.1	108	0.1	113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82	0.1	84	0.1	66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43	0.1	41	0.1	32	0.1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64	0.2	161	0.2	96	0.2
		스포츠 신발 제조업	772	1.0	738	0.9	602	1.1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209	0.3	216	0.3	83	0.2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5,975	7.7	6,174	7.7	5,110	9.7
		자전거 도매업	440	0.6	438	0.5	452	0.9
		스포츠 의류 도매업	2,748	3.5	2,763	3.4	2,146	4.1
		스포츠 가방 도매업	146	0.2	141	0.2	96	0.2
		스포츠 신발 도매업	2,368	3.0	2,560	3.2	2,109	4.0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825	4.9	3,846	4.8	2,954	5.6
		자전거 소매업	655	0.8	636	0.8	626	1.2
		스포츠 의류 소매업	6,377	8.2	7,034	8.7	3,868	7.3
		스포츠 가방 소매업	21	0.0	18	0.0	7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3,354	4.3	3,343	4.1	1,623	3.1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680	0.9	772	1.0	821	1.6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138	0.2	155	0.2	125	0.2
스포츠 서비스 업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740	0.9	758	0.9	593	1.1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4,743 (279)	6.1	5,406 (303)	6.7	4,998 (105)	9.4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7,073	9.1	6,841	8.5	1,007	1.9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34	0.0	45	0.1	25	0.0
		회원권 대행 판매업	124	0.2	132	0.2	112	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21	0.0	22	0.0	18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1,843	2.4	1,896	2.3	1,335	2.5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49	0.1	43	0.1	30	0.1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0	0.1	47	0.1	19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	-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	-	-	-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242	0.3	236	0.3	144	0.3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325	0.4	324	0.4	170	0.3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29	0.3	210	0.3	157	0.3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3	0.0	26	0.0	22	0.0
	스포츠 교육기관	태권도 교육기관	799	1.0	1,237	1.5	640	1.2
		무술 교육기관			443	0.5	206	0.4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959	1.2	1,144	1.4	723	1.4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3,811	4.9	3,388	4.2	3,472	6.6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429	0.5	344	0.4	210	0.4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949	2.5	1,990	2.5	309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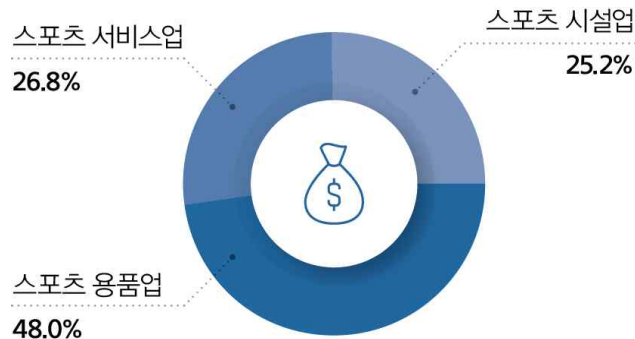
※ 괄호()안의 숫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제외 매출액 현황임

< '18~'20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대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스포츠 시설업		19,849	25.4	20,748	25.7	13,316	25.2	-35.8
스포츠 용품업		34,371	44.0	35,405	43.9	25,412	48.0	-28.2
스포츠 서비스업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23,847	30.5	24,532	30.4	14,190	26.8	-42.2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19,383	-	19,428	-	9,297	-	
합 계	체육진흥 투표권 포함	78,067	100.0	80,684	100.0	52,918	100.0	-34.4
	체육진흥 투표권 제외	73,603	-	75,581	-	48,025	-	

< '20년 사업종류별 매출액 비중 >



< '18~'20년 스포츠산업 산업분류별 종사자 수 >

(단위 : 백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 체			4,346	100.0	4,490	100.0	3,763	100.0
스포츠 시설업	경기장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13	0.3	14	0.3	13	0.3
		실외 경기장 운영업	21	0.5	22	0.5	19	0.5
		경주장 운영업	69	1.6	65	1.4	57	1.5
	참여스포츠 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164	3.8	161	3.6	128	3.4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373	8.6	383	8.5	288	7.7
		수영장 운영업	67	1.5	70	1.6	54	1.4
		볼링장 운영업	38	0.9	42	0.9	37	1.0
		당구장 운영업	255	5.9	254	5.6	182	4.8
		골프연습장 운영업	232	5.3	254	5.7	237	6.3
		스포츠 무도장 운영업	5	0.1	5	0.1	4	0.1
		체육공원 운영업	11	0.2	11	0.3	10	0.3
		기원 운영업	11	0.3	11	0.2	10	0.3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254	5.8	266	5.9	267	7.1
		스키장 운영업	89	2.0	89	2.0	76	2.0
	수상스포츠시설 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18	0.4	17	0.4	15	0.4
		기타 수상스포츠 시설 운영업	25	0.6	27	0.6	22	0.6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4	2.2	106	2.4	87	2.3
	스포츠 건설업	스포츠시설 건설업	69	1.6	64	1.4	62	1.7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스포츠 토목시설물 건설업	70	1.6	58	1.3	53	1.4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29	0.7	30	0.7	28	0.7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6	0.6	25	0.6	23	0.6
		자전거 제조업	9	0.2	9	0.2	9	0.2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27	0.6	26	0.6	25	0.7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7	0.2	8	0.2	7	0.2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	0.1	4	0.1	4	0.1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6	0.1	5	0.1	4	0.1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22	2.8	113	2.5	100	2.7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9	0.2	9	0.2	9	0.2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6	0.1	6	0.1	5	0.1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2	0.1	2	0.0	2	0.0
		스포츠 가방 제조업	7	0.2	7	0.1	6	0.2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신발 제조업	32	0.7	29	0.6	27	0.7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4	0.3	13	0.3	9	0.2
스포츠 용품업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도매업	151	3.5	156	3.5	142	3.8
		자전거 도매업	12	0.3	11	0.2	12	0.3
		스포츠 의류 도매업	63	1.4	64	1.4	57	1.5
		스포츠 가방 도매업	2	0.1	2	0.0	2	0.1
		스포츠 신발 도매업	23	0.5	24	0.5	22	0.6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구 소매업	269	6.2	262	5.8	224	6.0
		자전거 소매업	55	1.3	53	1.2	51	1.3
		스포츠 의류 소매업	352	8.1	377	8.4	315	8.4
		스포츠 가방 소매업	1	0.0	1	0.0	1	0.0
		스포츠 신발 소매업	68	1.6	63	1.4	53	1.4
		스포츠 관련 무점포 소매업	30	0.7	38	0.8	37	1.0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운동 및 경기용품 임대업	35	0.8	35	0.8	28	0.8
스포츠 서비스 업	스포츠 경기업	스포츠 경기업	19	0.4	20	0.4	18	0.5
	스포츠 베팅업	스포츠 복권발행 및 판매업	3	0.1	3	0.1	2	0.1
		기타 스포츠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8	1.1	50	1.1	45	1.2
	스포츠 마케팅업	스포츠 에이전트업	2	0.0	2	0.1	2	0.1
		회원권 대행 판매업	6	0.1	6	0.1	6	0.2
		스포츠 마케팅 대행업	1	0.0	2	0.0	2	0.0
		기타스포츠 마케팅업	83	1.9	80	1.8	75	2.0
	스포츠 미디어업	스포츠 신문 발행업	3	0.1	3	0.1	3	0.1
		스포츠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4	0.1	3	0.1	2	0.0
		스포츠 관련 라디오 방송업	-	-	-	-	-	-
		스포츠 관련 지상파 방송업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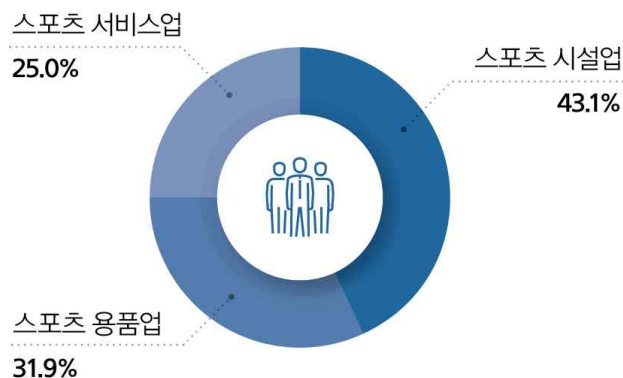
스포츠 서비스업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공급업	6	0.1	5	0.1	5	0.1
		스포츠 관련 유선 방송업	6	0.1	6	0.1	5	0.1
		스포츠 관련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	0.0	3	0.1	3	0.1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2	0.0	2	0.0	2	0.1
	스포츠 교육기관	태권도 교육기관	212	4.9	267	6.0	195	5.2
		무술 교육기관			89	2.1	83	2.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247	5.7	272	6.1	223	5.9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모바일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80	4.1	176	3.9	175	4.7
		기타 스포츠 게임 개발 및 공급업	17	0.4	13	0.3	12	0.3
	스포츠 여행업	스포츠 여행업	180	4.1	181	4.0	81	2.2

< '18~'20년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

(단위 : 천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대비)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스포츠 시설업	188	43.2	192	42.7	162	43.1	-15.4
스포츠 용품업	136	31.3	137	30.5	120	31.9	-12.4
스포츠 서비스업	111	25.5	120	26.7	94	25.0	-21.7
합 계	435	100.0	449	100.0	376	100.0	-16.2

< 사업종류별 종사자 수 비율 >



□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관리

○ 연도별(시계열) 통계결과 관리

- 결과 데이터 및 분석프로그램, 결과표, 보고서 형태로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음
- 특히 통계결과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서도 연도별로 비교 가능하도록 탑재,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통계포털 스포츠산업조사 연도별수록 현황>

▶ 스포츠산업조사	
△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연세분류별 사업체 수 현황	수록기간 년 2012~2019  
연산업분류별(대분류)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4~2019  
연지역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7~2019  
연 15개 공표단위(중분류)별 사업체 수 현황	수록기간 년 2009~2016  
연 설립년도 비율	수록기간 년 2011~2016  
연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구분류기준)	수록기간 년 2014~2016  
연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09~2016  
연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09~2016  
연 설립년도 비율	수록기간 년 2009~2011  
연 모집단수 비교	수록기간 년 2009~2011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연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수록기간 년 2012~2020  
연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수록기간 년 2013~2020  
연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구분류)	수록기간 년 2015~2015  
연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2~2019  
연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2~2019  
연 주·지·시·군·구별 인력충원	수록기간 년 2012~2019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기준 시점 및 공표시기

- 조사 기준시점 : 매년 12. 31
- 조사 실시기간 : 매년 8월~10월
- 조사 공표시기 : 매년 12월경
- 잠정치가 없으며 확정치를 공표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상세 일정표

- 사전기획 및 실사준비 : 약 6주
- 실사진행 : 약 11주
- 자료처리(전산처리 포함) : 약 5주
- 조사결과 작성 및 공표 : 약 3주

< 스포츠산업조사 일정표 >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일정
준비단계	조사 기획	6월 2주
	조사표 작성	6월 3주~7월 2주
	모집단 선정	7월 1주~7월 2주
	표본 설계	7월 3주
	조사원 채용	7월 3주
실사 수행 및 데이터 입력	담당자 교육 및 조사원 교육	7월 4주
	준비조사	7월 4주
	본조사 실시	8월 1주~10월 2주
	조사진행 관리	8월 2주~10월 2주
	데이터 입력	9월 1주~10월 3주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데이터 검증	10월 1주~10월 3주
	데이터 클리닝	10월 4주~11월 1주
	결과 분석	11월 2주~12월 1주
	최종 보고서 작성	12월 2주~12월 4주
	사후 지원	계약 종료 이후 6개월

2-2 공표일정

☐ 통계공표 일정 및 방법

- 공표주기 : 1년
- 공표범위 : 전국
- 공표방법 : 전산망(인터넷) 및 간행물
- 간행물명 : 스포츠산업조사
- 자료검색 : KOSIS(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공개 >

▶ 스포츠산업조사	
^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국세분류별 사업체 수 현황	수록기간 년 2012~2019  
국산업분류별(대분류)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4~2019  
국지역별 사업종류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7~2019  
국 15개 공표단위(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	수록기간 년 2009~2016  
국 설립년도 비율	수록기간 년 2011~2016  
국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구분류 기준)	수록기간 년 2014~2016  
국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09~2016  
국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09~2016  
국 설립년도 비율	수록기간 년 2009~2011  
국 모집단수 비교	수록기간 년 2009~2011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국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수록기간 년 2012~2020  
국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수록기간 년 2013~2020  
국 대분류별 종사자수 비율(구분류)	수록기간 년 2015~2015  
국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2~2019  
국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	수록기간 년 2012~2019  
국 주 15개 공표단위(중분류)별 사업체수 현황	수록기간 년 2009~2016  

< 문화센터 국가통계포털 자료공개 >



스포츠산업조사 ▼

통계표	전자책	MDSS	메타정보
목록보기	검색	명칭검색	상세검색
통계표 스포츠산업체 일반현황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0년 이전 통계표 사업종류별 인력충원 사업종류별 경기전망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 조직형태 및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및 업종별 사업체 수 종사자수별 사업체 수(구분류 기준) 종사자 수별 사업체 수 스포츠산업 전체 요약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특수분류체계 변동 내역

- 구분류체계 사용
 - 2011년 기준조사까지는 4개의 대분류, 15개 중분류, 46개의 세분류로 구성된 특수분류체계 사용
- 신분류체계 적용
 - 2012년 기준조사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스포츠산업특수분류 v.3을 적용함

※ 09~11년 기준조사와 2012년 기준조사 분류 변화(세세분류 기준)

※ 12년 기준조사 적용(신분류)

- 스포츠 시설업
(중분류1, 소분류6, 세세분류19)
- 스포츠 용품업
(중분류2, 소분류6, 세세분류26)
- 스포츠 서비스업
(중분류4, 소분류8, 세세분류20)

※ 09~11년 기준조사 적용(구분류)

-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소분류4, 세세분류17)
-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소분류7, 세세분류21)
-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임대업
(소분류3, 세세분류5)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소분류1, 세세분류2)

- 신분류체계 개선
 - 2018년 기준조사에서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스포츠산업특수분류체계 일부 개편 65개 세세분류 → 66개 세세분류
 - 이후 2020년 기준 조사까지 분류체계 유지

3-2 시계열 비교성

☐ 시계열 유의사항

- 주요지수 문항은 시계열을 유지하여 관리함
 - 2020년 기준 조사의 시계열 단절은 발생하지 않음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co.kr>
 - 국내통계 - 기관별통계 -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문화센터 : <http://stat.mcst.go.kr>
 - 주제별 통계 - 스포츠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https://www.mcst.go.kr>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 체육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4-2 연락처 정보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3-3121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국가통계포털(KOSIS) 소개 자료

▼ 통계개요	
○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4)
○ 조사목적 및 활용	
조사목적	스포츠산업 부문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분야 정책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작성유형	
작성유형	조사통계
○ 조사대상	
조사대상 범위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제조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조사대상 지역	전국
조사단위 및 조사대상 규모	조사대상 : 사업체 조사단위 : ○ 사업체 단위: 단독사업체, 지사(지점) 등 * 본사와 지사가 표본으로 동시에 대상사업체로 선정된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기업체 단위 조사 표본규모 : ○ 표본규모 : 총 6,962개 업체 - 스포츠 시설업 : 2,771 개 - 스포츠 용품업 : 2,963 개 - 스포츠 서비스업 : 1,228 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내 통계설명자료(메타정보) 이용
 -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통계표 조회 후 '더보기' 클릭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통계표 조회 화면 >

KOSIS

스포츠산업 전체실적

자료명: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수목기간: 년 2009 ~ 2014 / 자료문양: 044-203-315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실태조사 [다보기]

일괄실행 * 항목 [1/1] 통계분류 [28/28] 통계분류 [3/3] 시점 [3/3]

(단위: 십억원, %)

통계분류(1)	통계분류(2)	통계분류(1)	통계분류(2)	2014	2013	2012
총합계	소계	스포츠내수액	원	40,637	39,765	37,688
		백분율		100	100	100
		스포츠영업비용	원	37,916	36,182	35,198
		백분율		100	100	100
		스포츠영업이익	원	3,455	4,587	3,493
		백분율		100	100	100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소계	스포츠내수액	원	0	0	0
		백분율		0	0	0
		스포츠영업비용	원	0	0	0
		백분율		0	0	0
		스포츠영업이익	원	0	0	0
		백분율		0	0	0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스포츠내수액	원	0	0	0
		백분율		0	0	0
		스포츠영업비용	원	0	0	0
		백분율		0	0	0
		스포츠영업이익	원	0	0	0
		백분율		0	0	0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스포츠내수액	원	4,030	3,638	3,458

e: 추정치, p: 잠정치, -: 자료없음, -: 미상자료

*선택한 시점의 계층(항목×분류)에 자료가 없을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조사표

- 2020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조사표(첨부파일 참조)

○ 법적근거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정부승인통계 제113021호로 지정된 통계조사

5.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및 서비스

5-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관리 및 서비스 절차

- 실사 수행 종료 후 조사업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로 데이터 제출
 - 데이터의 오류 및 점검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책팀으로 데이터 이관
- 문화체육관광부 내 정책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 일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MDIS) 업로드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전산화된 조사기법(CAPI, CATI 등) 활용으로 조사결과 입력·내용검토 단계에서 조사오류, 입력오류 및 논리오류 등이 자동 수정되어 자료의 영구보존 및 서비스를 위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 논리설계서에 따라 수집된 최종 마이크로데이터는 점검 후 MDIS(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문화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보유 및 관리

-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작성기관 및 조사관리 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일 형태로 직접 보유 및 영구 보존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는 내부 업무 지침 및 매뉴얼을 준용하여 철저하게 관리

5-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와 제공 방법

- 제공데이터 : 2014년 ~ 2019년
- 제공처 : 통계청 MDIS
- 제공방법
 -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 형식으로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방향, 활용 등의 방법은 보고서를 별도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공자료
 - 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원시자료)
- 제공자료 포맷
 - 엑셀(csv), SPSS(sav), STATA(dta), SAS(sas7bdat) 등의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
- 소요시간
 - MDIS 회원가입 후 데이터 신청, 인증, 활용내역 기재 후 즉시 다운로드 가능
- 소요비용
 - 무료
- 항목제공 여부 및 미제공 사유
 - 조사대상 식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관리사항(응답 기업체 정보)은 식별 불가능한 일련번호로 가공하여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 데이터의 수정 또는 보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분석 시 가급적 최신 데이터를 다운받아 활용하는 것을 권장
 - 마이크로데이터에 포함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공 불가
 - 다운받은 마이크로데이터는 데이터 신청 시 기재된 항목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 불가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과정 비밀보호

- 통계법에 의한 비밀보호에 대한 사항을 면접원 교육 시 전달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제1항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제2항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자료 처리 과정 비밀보호

- 자료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통계청 이용지침 전달
- (보존용 자료 비밀보호) 통계청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
 -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
 -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 ④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 자료 보관 과정 비밀보호

- 자료 보관시 별도의 독립된 공간[창고]에서 설문지 보관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제공 정보

- 응답자 정보는 모두 제거하고 공표
- 제거 정보 : 응답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응답자 신상에 관한 정보는 모두 제거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보안 관리 방안

- 투입인력 및 면접원 관리
 - 본 사업에 투입하는 관련자 대상 보안각서 서명 후 제출
 - 투입 면접원 대상으로 보안 교육 실시
- 데이터 접근 제한
 - DB 접근권한은 전담 팀에게만 부여하고 해킹, 바이러스 대비 컴퓨터 보안 실시
- 소프트웨어 완비
 - Eagle Eye, Sophos Safeguard

- 개인정보 현황(Meta data)에 대해 관리서버로 전송 관리하여 자동 검색
-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 응답자 리스트는 Eagle eye v.3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으로 보호 및 관리되고 있음

○ 리스트 관리

- 별도 설문지 관리 공간 마련
- 종이형태의 리스트 관리 교육 실시
- 본사 내부의 공유 드라이브에 리스트를 공유하되, 본 조사 관련 연구/전산/실사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 설정
- 면접원은 hard copy 본으로 명부를 수령하고, 자신이 할당받은 명부에 대해 전수 컨택 및 면접이 종료될 경우, 본인 담당SV에게 hard copy 반납
⇒ 면접원이 자의적으로 리스트를 폐기할 수 없도록 함

Ⅵ.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 주관부서 및 인력구성

-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담당인력 : 사무관 1명(총괄), 주무관 1명(기획, 실행, 자료처리, 결과분석, 공표 등)

□ 외부 수탁기관((주)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 인력 구성('20년 기준 조사 기준)

투입인력 현황							
21년 04월 06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담당업무
전담참여	사업총괄		46	박사	경영학	18년 3개월	총괄
	연구·관리		39	박사	사회학	10년 10개월	연구책임
			37	석사	사회학	9년 4개월	연구
			29	박사	응용통계학	3년 6개월	연구
			32	박사	정치외교학	1년 4개월	연구
			50	박사	가정학	24년 1개월	실사 및 검증 책임
	실사 및 검증		47	박사	전산학	19년 6개월	실사 및 검증
			29	박사	회계산업경영학	2년 11개월	연구
			29	고졸	-	16년 4개월	실사 및 검증
	분석		46	고졸	-	25년 8개월	분석책임
비현당 참여	디자인		37	박사	서각디자인	7년 3개월	보고서 디자인

2. 통계위탁 조사

□ 통계 민간위탁에 따른 지침 반영

-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반영한 단계별 조사 진행
 - 단계별(기획 → 수행기관 선정 → 조사표 설계 및 조사지침서 작성 → 조사 →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결과 관리 → 통계공표 및 이용) 통계조사 민간위탁 지침을 준용하여 추진
- 조사지침서 등에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내용, 조사대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조사기관이 조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토록 지원
- 조사완료 후 수행기관 제출 자료
 - 조사지침서, 응답가이드, 실사보고서, 자료 검증 보고서, 조사결과 데이터, 결과보고서 등

3.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품질 제고 노력

○ 현장 조사 시 한계 보완

- 마사회, 경륜장 등 지사(점)별 실적 파악이 어려운 경우 본부(기업체)에서 일괄 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 및 효율성 제고
- 복권발행업, 스키장운영업 등 사업체 수가 적은 업종은 전수조사 및 본사를 통한 일괄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도를 제고
- 표본대체를 통한 편향 및 오차 감소와 현장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당초 표본 추출시 Over Sampling을 통하여 최소 표본수 확보에 노력

○ 조사 결과 활용성 제고

- 스포츠산업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모수를 추정함에 따라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결과 활용 시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공표단위를 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정된 예산에 따른 최적의 표본을 산출하였으나, 보다 신뢰수준이 높은 자료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본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표본 명부 확보 및 모집단 최신성 유지

- 동 조사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축되어야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 가능하므로 향후 조사시에도 모집단 확보 및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명확한 모집단 구성을 위한 최신 모집단 보완 방법의 지속 적용 및 최신 모집단 자료 수집, 행정자료 등의 정확한 표본 추출틀이 작성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